보도자료

수협의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발급 관리 부실에 대한 가산세 사건

[2018헌바338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위헌소원]

[선고]

헌법재판소는 2021년 7월 15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이 관리 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잘못 교부 발급한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한 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중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 가운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관한 부분이 모두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 위 조항들이 헌법상 비례원칙에 반하여 수협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이 있다.



2021. 7. 15.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모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지구별·업종별 수산 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인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서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을 위한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교부·발급하여 왔다.
- 각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해외로 출국하였거나 사망한 어민에 대하여, 또는 폐선·계선이나 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사용하도록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교부·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및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 청구인들은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각 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중 각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 가운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경우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정의 것)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 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결정주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중 각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 가운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재산권 침해 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발 급과 관련한 관리 부실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 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면 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여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이 관리 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어민에게 잘못 교부·발급하거나 어민이 아닌자에게 교부·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 침해의 최소성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면세유류 관리기 관인 수협의 관리 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잘못 교부·발급된 경우 면세유가 실제로 부정 유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협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은 수협이 관리 부실을 넘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교부·발급하는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한 감면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여1) 위법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강도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를 고려한 제재로 볼 수 있고, 20%라는 가산세율이 본래의 제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조세특례제한법은 수협으로 하여금 행정기관 등에 어민의 사망·이주 여부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의 발급 및 사용을 즉시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도 함께 부여하고 있으므로, 2) 심판대상조항

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1항 제1 호 참조

²⁾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8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20항 참조

이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협의 책임 정도에 따라 제재의 강도에 차등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거나 자의적인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

- 나아가, 국세기본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 있다.3)
-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여 면세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이 관리부실로 인하여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당하는 불이 익보다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 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선애)

할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 협에게 부과된 어업용 면세유 공급에 관한 관리·감독의무 위반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수협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해당 면세유가 어민 외의 사람에게 제공되거나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등 부정 유통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위반의 정도를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여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가산세액 산출의 기준 금액이 해당 어업용 면세유가 부정 유통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산출되는 해당 면세유 총량에 대한 제반 감면세액의 합계액인 점에 비추어 볼때, 수협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
- 심판대상조항은 수협의 관리 부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

헸는지 여부에 따라 그 위반의 정도를 반영하여 가산세 부과 책임을 차등화

³⁾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등 참조.

법다고 볼 수 있는 경우와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여 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경우에 동일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한다. 그 결과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은 관리 부실이 인정되기만 하면실제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위반의 정도를 넘는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된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결한 것으로, 헌법상 비례원칙에 반하여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_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이 관리 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잘못 교부·발급한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이 수협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